

- ▶ 2026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- ▶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,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호(지)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?

홈페이지(www.mpva.go.kr)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🔍 검색창에 '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'를 검색해보세요.

※국가보훈부 '나만의 예우'에서는 나의 민원행정보조회 민원서비스 지원내용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(로그인 필요)



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

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: ☎ 02-2225-2550

- 부산 : ☎ 051-601-6762~3
- 대전 : ☎ 042-605-0732~3
- 대구 : ☎ 053-630-7127~8
- 광주 : ☎ 062-602-6615~6
- 인천 : ☎ 032-363-9893~4

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지원

기존 중위소득 125% 이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수권 유족(보훈보상대상, 지원대상 포함)에게 무료로 민·가사, 형사, 행정소송 지원

▶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번으로 문의

1:1 보훈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?

전국 어디서나

1577-0606

대부금 상환, 잔액 등이 궁금하시다면?

전국 어디서나

1577-0301

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화번호는? 070-8740-1607

보훈단체에 가입하시면 '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', '보훈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제도 안내', '보훈행사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'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
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'모두의 보훈 드림' 누리집

(www.donate.bohun.or.kr)

후원하신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 됩니다.

자립기반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, 교육, 재해복구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	예우문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·희생에 감사와 보답을 전하는 예우문화를 만듭니다.	노후복지 나이가 많으신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습니다.	의료재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월체어 등 보조기를 지원하고, 가족상실 충격 등 심리재활을 지원합니다.
---	---	--	-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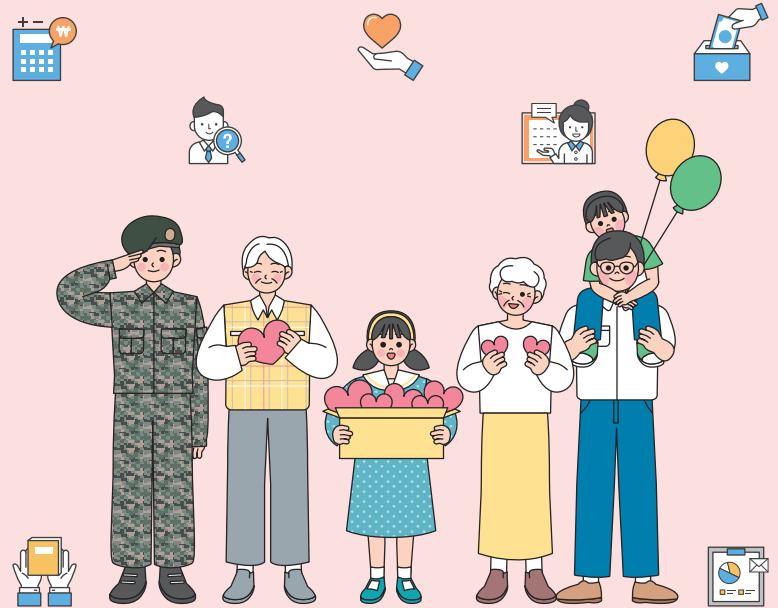
「모두의 보훈 드림」 홈페이지 QR코드


QR코드를 사용하시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.



2026 보훈가족을 위한
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제도



- 
교육지원 03
 수업료, 학습보조비,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.
- 
취업지원 04
 가점 부여,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합니다.
- 
의료지원 06
 보훈병원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.
- 
대부지원 08
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·농토구입,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합니다.
- 
복지지원 10
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,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.
- 
기타지원 12
 국·공립공원 입장료 할인 등을 지원합니다.
- 
사망시 예우 14
 영구용 태극기를 지원합니다.

※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, 상이등급에 따라 전·공상군경으로 등록되며 이에 따라 차량 지원, 교통시설 이용지원, 보철구 지급 등이 지원됩니다.

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자녀,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
- ▶ 특수임무공로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
- ▶ '16. 6. 23.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(95. 1. 1. 이후 출생자)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
- ▶ '16. 6. 23. 이후 신규등록 특수임무부상자(상이7급)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
- ▶ 국민기초수급자(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 생활수준조사 생략

▶ 중·고등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?

- 관할 보훈청에서 교육지원 대상으로 결정·통보받은 경우,
 - 가까운 보훈청에서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
-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.
 - 학습보조비
 - 연간 지급액 : 중학교 124,000원, 고등학교 144,000원(인문계), 186,000원(전문계)
 - 지급시기 : 4월15일,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
 -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.

▶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?

-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(일부대학 미 실시)
 - 가까운 보훈청에서 '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
 -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교육지원 >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.
- 합격하셨다면, '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(또는 행정실)에 제출하세요.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.
 - 증명서 발급 : 가까운 보훈청 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'정부24'에서 발급
 - 재학 중 신규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

○ 등록금(수업료)이 면제됩니다.

- 일반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) 면제기간

2년제 대학	3년제 대학	4년제 대학	5년제 대학	6년제 대학
4학기	6학기	8학기	10학기	12학기

-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

구분	2년제	3년제	4년제
면제학점	84학점 이하	126학점 이하	168학점 이하

※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(입학학기 제외)만 면제

-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제한 없음(면제기간, 성적)
-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학습보조비(4월 15일, 10월 15일) : 연간 236,000원 (단 지급횟수에 제한 있음)

▶ 특수교육대상자(장애인) 및 보훈장학금(대학원, 특수교육) 신청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

▶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.

- ▶ '16. 11. 30. 이후 신규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(특수임무공로자)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
- ▶ '16. 11. 30. 이후 신규등록한 자의 상이 6급 이상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의 자녀인 경우,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, 취업알선 횟수도 1인 3회로 제한(가점지원 제한 없음)

▶ 채용시험 시 가산점(10% 또는 5%)을 받을 수 있습니다

-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(www.gov.kr), 읍·면·동주민 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'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제출
 - 기업체, 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: 원서접수 시 첨부
 -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: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, 합격자 발표 후 제출(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,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)
- 가점내용
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특수임무사망자(행불)의 유족 : 10%
 - 특수임무부상자 · 공로자의 가족 : 5%

▶ 취업이 어려우시다면...

- 이력서(사진 부착) 및 자기소개서 1통,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
-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-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<https://job.mpva.go.kr>)으로 신청 가능
 -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,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
 - ※ 자녀는 39세까지 신청 가능
 - 온전직·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 채용 시 추천

▶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

-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, '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'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공공직업훈련기관 : 기능대학,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,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, 직업전문학교 등
 - ※ 우선선발 모집 정원 및 선발 방법은 개별 모집 공고 확인 필
-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,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.
 -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
 - ※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(주20시간)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
 - ※ 법정취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
 - ※ 지원 횟수 3회 (동일 과정 및 과목 지원 불가)

▶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

-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(<https://job.mpva.go.kr>)에서 취업수강료 <지원과정(목) 및 지정교육기관> 확인 후,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 등록 후, 관할 보훈청에 '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개인정보사전동의서, 서약서, 영수증'을 먼저 제출하세요. (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)
-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⇒ 관할 보훈청
 - ※ 타부처(자치단체 포함) 중복지원 불가 (예 : 내일배움카드)
- 학습 진도율 80% 이상(수강기간 2/3 이상)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(구비서류 : 수강완료 사실확인서, 응시확인서류,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, 통장 사본)
-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(70%) 입금
 - 1인당 지원한도액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,000,000원(연간 1,500,000원) 유가족 총 1,500,000원(연간 750,000원)
 - ※ 단, 법정취업자,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
 - ※ 수강료 외 시험응시(수수)료, 검정(수수)료, 교재비는 미지원
 - ※ 경비신입교육(일반, 특수)과정은 수강료 100% 지원

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

-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, 취업수강료 지원,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,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 ☎ 사이트 주소 : <https://job.mpva.go.kr>

▶ **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**

-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(단, 치아보철, 성형 등은 제외)
 - 특수임무부상자 국비 진료
 - 특수임무공로자 및 보훈후에 등록된 가족의 본인 부담금 60% 감면
 - ※ '16. 6. 23. 이후 신규등록 유공자의 경우,
 -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(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)에 한함
 - ※ '16. 6. 23. 이후 신규 등록된 7급 상이자의 경우,
 -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%를 본인이 부담
-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
 - 중앙보훈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항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14)
 - 부산보훈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 051-601-6000)
 - 광주보훈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2-6114)
 - 대구보훈병원 :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(☎ 053-630-7000)
 - 대전보훈병원 :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(☎ 042-939-0114)
 - 인천보훈병원 :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(☎ 032-363-9800)
 - 중앙보훈병원 서울요양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항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23)
 - 부산보훈병원 부산요양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 051-601-8600)
 - 광주보훈병원 광주요양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4-5600)

▶ **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나요?**

- 특수임무부상자는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<예우보상> 지원안내 > 의료지원 및 위탁병원 >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(1577-0606)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확인 후,
-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,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 - 지원 범위 :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(초음파 검사, MRI, 건위소화제)

▶ **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...**

- 특수임무부상자가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 병원 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,
- 반드시,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.
 - ※ 미연장 시 최초입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원
- 입원한 날로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
 - 제출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응급실 기록지, 진단서 등
-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.



▶ 아파트 특별공급(분양, 임대)을 받고 싶습니다

- 신청자격은?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
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
 -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
 - 신청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(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은 보존관서에 문의)
 - ※ 특별공급(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)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·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주소지 관할 보존청에 신청하세요
 - 주택우선공급신청서(신청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개인정보동의서(동의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추천서약서(서약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무주택입증서류 : 현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(전유부) 1통
 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1통
 - 배우자 및 본인·배우자의 동거가족 도장
 - ※ 매년 1월 초 접수기간(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)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
 - ※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
- 신청 후에는?
 - 배정기준(무주택 기간, 희생 및 공헌도,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)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
 -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
 - ※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확보된 주택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

▶ 긴급자금이 필요한데... - 특수임무유공자 및 수권 유족

- 전국 국민은행, 농협은행의 “나라사랑 대출창구”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.
 - 주택구입(신축)대부 :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로 주택을 구입(신축)하는 경우
 - 주택임차대부 :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의 전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
 - 주택개량대부 :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
 - 사업(창업)대부 : 본인,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·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
 - 농토구입대부 : 본인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,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·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
 - 생활안정대부 : 생활비, 재해복구비, 의료비, 경조비,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
 - ※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,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“나라사랑 대출창구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대부종류 및 조건

구분	대부한도액	연이율	상환기간	담보조건
아파트 분양	3,000~6,000만원	연 2.5%	20년균등	분양 아파트 (후취담보시 균인연금, 보험급여금, 연대보증인·직접대부 시)
주택구입(신축)	3,000~6,000만원	연 2.5%	20년균등	구입(신축)주택
주택임차	2,000~4,500만원	연 2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험급여금(균인연금)
주택개량	800만원	연 3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험급여금(균인연금)
농토구입	3,000만원	연 2.5%	3년거치 10년균등	구입농토
사업(창업)	2,000만원	연 3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험급여금(균인연금)
생활안정 (재해로 인한 경우)	300만원 (600만원)	연 2%	3년균등	부동산·보험급여금(균인연금)·연대보증인(직접대부 시)

- ※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시에만 담보 가능(위탁은행 문의)
- ※ 보험급여금(균인연금)을 담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대부(한도300만원)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도입(24.1.-)
 - 국민은행(KB스타뱅킹) 또는 농협은행(NH뱅킹) 앱을 통해 신청

- 국민은행, 농협은행 “나라사랑 대출”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존청에 문의하세요.(예산 범위 내에서 보존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)

▶ “나라사랑 대부금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던데...

- 대부받은 국민은행, 농협은행 지점(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존청)에서 ‘조세면제(감면)증명서’, ‘대부재산증명서’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
 - 취득세 면제(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)
 - ※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
 - 농토 :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
 - 주택 :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
전용면적 85㎡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

▶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

- 관할 보건청에 '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 :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(배우자 또는 부모)
 - 선정기준 :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※ 제외대상 :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(예 :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)
 - 대상결정 :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,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
 - 서비스지원 :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·정서지원 등 재가서비스 제공
 - ※ 주1~2회(1회 1~2시간 서비스 제공)

▶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

- 관할 보건청에 '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(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)
 -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수권 유족(부모)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~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 받고 있는 분
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
 - ※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
-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,
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,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
 - 공로자, 수권 배우자, 수권 부모 : 본인부담액의 40% 지원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%)
 - 부상자 : 본인부담액의 80% 지원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
 -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

▶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

-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
 - ※ 수원보훈요양원 (☎ 031-240-9000), 광주보훈요양원 (☎ 062-602-5800)
 김해보훈요양원 (☎ 055-340-8585), 대구보훈요양원 (☎ 053-606-3000)
 대전보훈요양원 (☎ 042-829-3000), 남양주보훈요양원 (☎ 031-579-7000)
 원주보훈요양원 (☎ 033-769-2000), 전주보훈요양원 (☎ 063-220-0777)
 - 신청대상 :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(부모)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'시설급여' 해당자
 - ※ 주간보호는 "재가급여" 해당자도 가능

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주민등록등본 1부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, 동거자일 경우는 1부)
 - 전염병 질환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병원 등 발행)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,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 일부 감면
 - 감면대상 :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배우자 및 유족(부모)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감면율
 - 부상자 : 본인부담액의 80% 감면
 - 공로자, 배우자, 유족(부모) : 본인 부담액의 40% 감면(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%)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

▶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

- 보훈원에 '보훈원 입소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 :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(자녀 제외)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(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, 부상자 본인은 남자 60세 이상, 여자 55세 이상)
 - ※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
- 입소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- 보훈원에 입소하시면,
 - 의식주 제공·의료지원·사망 시 국립묘지 합장 등 지원
 - ※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고산로 97 ☎ 031-250-1521

▶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주하고 싶은데...

- 보훈복지타운에 '복지타운 입주신청서'를 제출하세요
 - 신청대상 : 민법상 성인인 특수임무유공자 수권유족 중 무주택자로,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
- 입주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(☎ 031-250-1562)
 -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관에서 관리
-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?
 - 8평형(독신세대)은 보증금 150만원 *관리비 별도
 - 13평형(부부세대)은 보증금 250만원 *관리비 별도

▶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

- 신청대상은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분
 - 지급대상 : 생활수준조사(소득·재산) 결과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
 - 지원금액 : 월 15만원

▶ **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- 특수임무유공자 및 수권 유족**

-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
 -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'재난관리업무포털'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'재해발생신고서', '피해사실확인서' 제출 (소방서, 경찰서 또는 시·읍·면·동주민센터에서 발급)
-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

▶ **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**

-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,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대상 :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, 수권 유족 단, 수권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·모 모두 해당
 - 100% 감면시설 : 고궁 및 능원, 국·공립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, 국·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·공립수목원, 국·공립 자연휴양림
 - 50% 할인시설 : 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공공체육시설

▶ **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**

- ▶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필요, 협약콘도 및 이용방법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기타지원 >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

협약콘도(명)	내용	예약문의
보훈휴양원	충주 보훈휴양원 연중 이용 가능	☎ 043-854-2121 또는 http://condo.bohun.or.kr
소노호텔&리조트(前 대명)	15개 지역(패밀리 및 스위트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주말, 연휴, 성수기예약 제외) *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 요금으로 이용 가능	전화☎ 1588-4888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sonohotelsresorts.com * 이용권 번호 객실(룸은리) : 52099159 * 소노리조트(소노캄비발디/경주, 솔비치남해) 객실(룸은리) 52099324
한화리조트	12개 지역(20평형대 디럭스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(잔여 객실에 한함) * 성수기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	홈페이지 예약 www.hanwharesort.co.kr * 고객센터 : 11806536
일성리조트	7개 지역(19~40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제주비치는 금·일 주말요금 적용 * 부곡은 상시영업이 아니므로 예약가능 여부를 해당 지점에 사전 확인☎065-536-9870) * 금, 토, 공휴일 전일 예약은 가능하나, 별도 요금 적용 *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	전화예약☎ 1566-8113 또는 예약사이트 www.ilsungresort.co.kr * 법인번호 : 62239063
호반호텔앤리조트	3개 지역 * 연중(주말 연휴 제외 /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아일랜드리조트(안면도), 포레스트리조트(제천), 레스트리조트(제천) 주말, 연휴 예약불가 * 자세한 이용사항 업체 문의	홈페이지 예약(www.resom.co.kr) * 리솜 홈페이지(resom.co.kr)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 > 회원정보에서 "MOU" 선택 > 업체 "국가보훈부" 선택 후 인증번호(1400) 입력 > 회원가입 완료 후 "패키지 예약" 진행
청풍리조트	충북 제천 소재(7.9평형 스탠다드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* 성수기, 연휴 등 예약 가능하나, 요금 별도문의	전화예약☎ 043-640-7000
주문진리조트	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(10~19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성수기, 연휴기간은 요금 별도 문의	전화예약☎ 033-661-7400

* 예약번호, 고객센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이용 전 반드시 확인요망

▶ **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**

- 주소지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.
 -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 /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/ 가족관계증명서
 -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/ 지자체 증명명 수수료
 -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/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



▶ 먼저, 가까운 보훈(지)청에 연락주세요

- 특수임무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(지)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, 화장장 감면을 위한 '국가유공자 확인원'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.
 -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음
 - ※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소지 시, 화장장 감면 가능(확인원 대체)

▶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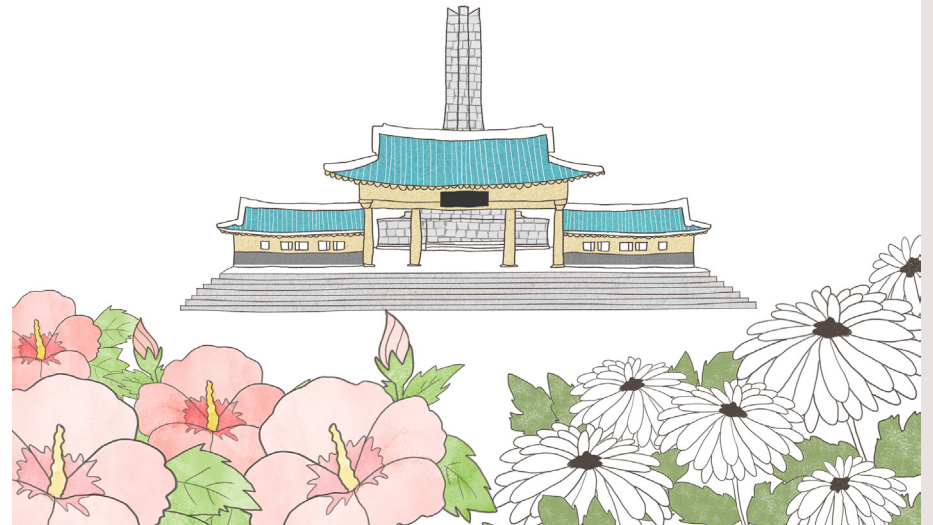
-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 의증환자(수당지급 대상자)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
- 지원내용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
 - ※ 계약체결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(장례지도사, 수의, 상복, 관, 장의 차량 등)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보상과에 반드시 '장례기간' 중 유족이 신청

▶ 보훈청에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-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관할 보훈(지)청에 사망신고(전화)하시면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 - 승계순위 :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 순으로 권리 승계
-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.
-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사진 1매(3.5X4.5cm, 6개월 이내 촬영 여권 사진 크기)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(지)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꼭!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

- 본인·배우자 부모·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사망 또는 국적 상실, 국적 회복
 - 본인의 결혼·재혼·이혼(배우자 포함)·자녀출생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·소멸된 때
 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
 - 특수임무공로자(수권 유족)의 주소변경, 영주권 취득
 - 특수임무공로자가 금고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



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

기관명	관할지역	주소·전화번호
서울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강동구, 송파구,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은평구	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(02)3785-0815
서울남부보훈지청	서울특별시 구로구, 금천구, 관악구, 동작구, 강남구, 서초구	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(02)3019-2300
서울북부보훈지청	서울특별시 종로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도봉구, 강북구, 노원구	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(02)944-9260
경기남부보훈지청	수원, 안양, 과천, 안산, 평택, 오산, 의왕, 군포, 시흥, 화성	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(031)259-1801
인천보훈지청	인천광역시, 부천, 광명, 김포	인천 미추홀구 석성로 239 (032)588-4100
경기북부보훈지청	의정부, 동두천, 구리, 고양, 남양주, 파주, 포천, 양주, 연천, 가평, 양평	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(031)843-5748
경기동부보훈지청	성남, 하남, 광주, 용인, 안성, 이천, 여주	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, 대경빌딩 3층(언남동) (031)289-2302
강원서부보훈지청	춘천, 원주, 화천, 양구, 홍천, 인제, 철원, 횡성	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(033)258-3609
강원동부보훈지청	강릉, 속초, 동해, 태백, 삼척, 고성, 양양, 정선, 평창, 영월	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(033)610-0606
대전지방보훈청	대전광역시, 논산, 계룡, 금산, 부여	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(042)280-1114
충남서부보훈지청	보령, 서산, 당진, 태안, 홍성, 예산, 청양, 서천	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(041)630-3700
충남동부보훈지청	세종특별자치시, 천안, 아산, 공주	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(041)589-4900
충북남부보훈지청	청주, 진천, 보은, 영동, 옥천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(043)285-3213
충북북부보훈지청	충주, 제천, 단양, 음성, 괴산, 증평	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(043)841-8800

기관명	관할지역	주소·전화번호
대구지방보훈청	대구광역시, 상주, 김천, 구미, 경산, 성주, 칠곡, 고령, 군위, 청도	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(053)230-6010
경북북부보훈지청	안동, 영주, 문경, 봉화, 의성, 영양, 청송, 예천	경북 예천군 행복1길 5 (054)650-1400
경북남부보훈지청	경주, 포항, 영천, 영덕, 울진, 울릉	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(054)778-2600
부산지방보훈청	부산광역시	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(051)469-8991
울산보훈지청	울산광역시, 양산	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(052)228-6500
경남동부보훈지청	김해, 창원, 밀양, 거제, 창녕, 의령, 함안	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(055)981-5600
경남서부보훈지청	진주, 사천, 통영, 남해, 하동, 고성, 함양, 거창, 합천, 산청	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-5 (055)752-3881
광주지방보훈청	광주광역시, 나주, 담양, 장성, 화순, 강진, 장흥, 해남, 완도	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 (062)975-6500
전남동부보훈지청	순천, 여수, 광양, 곡성, 구례, 보성, 고흥	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(061)720-3200
전남서부보훈지청	목포, 무안, 영광, 진도, 함평, 신안, 영암	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(061)273-0093
전북동부보훈지청	전주, 남원, 완주, 진안, 장수, 임실, 순창, 무주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(063)239-4500
전북서부보훈지청	익산, 군산, 정읍, 김제, 부안, 고창	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-5 (063)850-3702
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	제주특별자치도	제주 청사로 59, 3층 (064)710-8411

